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337608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4,16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8. 11. 1.부터 2024. 8. 14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(다만, '채권자'를 원고로, '채무자'를 피고로 함)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오세영

별지